KOSHA GUIDE

C - 75 - 2013

- (7) 장비 작업 전에 브레이크, 후진경보등, 후방감지기 등 안전장치의 설치상태 및 과부하방지장치, 권과방지장치 등 방호장치에 대하여 검정기관의 검정 합격 여부, 운전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8) 강풍(10m/s이상) 등의 악천후 시 식재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, 비, 눈, 그 밖의 기상상 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중지 또는 제383조 철골작업 중지를 준용하여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.
- (9) 충전전로의 인근에서 작업 시에는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 거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의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·기계장 치 작업을 준수 하여야 한다.

4.2 수목정지작업

- (1) 수목식재 전 수목의 가지를 다듬어 주어야 하고, 지엽이 무성한 것은 속가지를 수형에 부합되게 정지해야하며, 근로자의 찔림 및 인양작업 시 옷 걸림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.
- (2) 수목을 굴취하여 뿌리분 및 수관을 잘 포장해야 하며, 뿌리분 등의 포장은 새끼, 마대, 짚 등으로 싸매주어 뿌리 및 수피에 손상이 없도록 반드시 근로자 2인 이상 공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3) 특수한 수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굴취 전에 가지주를 세우고 수목굴취에 착수하여 수목의 넘어짐을 방지하여야 한다.